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진 및 사진산업 진흥 체계 마련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86)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가. 제정안의 필요성	3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8
2. 조문별 검토	10
가. 총칙적 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0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6
다. 사진 창작 및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안 제7조 및 제11조)	23
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안 제8조 및 제9조)	27
마.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안 제11조)	33
바. 사진자료의 보존(안 제12조)	35
사. 개인정보 보호 의무(안 제13조)	36
아. 벌칙(안 제15조)	3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연회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5. 8. 21.

다. 회 부 일 : 2025.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사진 분야는 문화예술 및 산업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사진작가의 권익 보호, 저작권 관리,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록물로서의 사진 보존 등은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사진의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고,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진산업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사진산업 등 관련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필요성

- 사진은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것으로, 순수 예술 사진을 포함하여 미디어 매체, 영상산업,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문화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그런데 지금까지 사진 분야의 발전은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달에 편중되어 왔으며, 사진작품 창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진의 예술적·산업적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사진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미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 및 시각예술의 한 장르로만 포괄적으로 규정될 뿐 개별 법률이 없어 사진 창작 지원, 산업 육성, 공공적 기록물 관리,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¹⁾.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미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문화예술 장르·산업 관련 입법 현황]

분야	관련법	비고
문학	「문학진흥법」	
미술	「미술진흥법」	
음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무용	-	「무용진흥법안」 및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문체위 계류 ²⁾
연극	-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연예(演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공연법」	
국악	「국악진흥법」	
사진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체위 계류 ³⁾
건축	「건축기본법」, 「건축법」 등	제21대국회에서 「건축예술진흥법 안」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
어문	「국어기본법」	
출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미술	「미술진흥법」	
만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뮤지컬	-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체위 계류 ⁴⁾
한복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문체위 계류 ⁵⁾
한지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문체위 계류 ⁶⁾
패션		패션산업 진흥법안 문체위 계류 ⁷⁾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 2) 「무용진흥법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2025.3.7.), 의안번호 제2208720호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2025.6.19). 의안번호 제2210945호
- 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2025.4.10.), 의안번호 제2209703호
- 4)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2024.6.21.), 의안번호 제2200793호
- 5)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2024.6.25.), 의안번호 제2200901호
- 6)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2024.12.18.), 의안번호 제2206624호
- 7) 「패션산업 진흥법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2025.2.4.), 의안번호 제2207890호

- 특히 디지털 환경의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위·변조(딥페이크 포함) 대응, 사진 메타데이터 표준화, 디지털 전송·인증 시스템, 지식재산권 보호 등 새로운 법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또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진자료 보존·활용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의무 부과 등 사진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사진 및 사진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문학, 미술, 국악 분야와 같이 개별 법률로 정하여, 사진 창작 및 산업 진흥, 전문인력 양성, 국제 경쟁력 강화, 개인정보 보호 등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사진을 진흥하기 위한 개별법 제정안이 제19대,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며⁸⁾, 제21대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수정의결(2023.12.19.)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으나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8)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2015.11.16. 발의, 의안번호 제1917751호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2019.9.18. 발의, 의안번호 제2022529호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2020.10.14. 발의, 의안번호 제2104505호

○ 제21대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찬성 의견으로는 사진을 독립적인 예술 분야로서 인정하고 장르 종사자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반대 의견으로는 사진은 시각예술의 일종으로, 제정안에 포함된 사진에 대한 지원내용이 「미술진흥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법 제정 실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제22대 국회에서도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

[사진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논의 경과]

구분	의안명(제안자)	제안일자	심사경과
제19대 국회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15. 11. 16.	상임위 상정('16.11.16.) 이후 임기만료 폐기
제20대 국회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19. 9. 18.	상임위 상정('19.11.18.) 이후 임기만료 폐기
제21대 국회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20. 10. 14.	- 상임위 상정('21.2.4.) - 법안소위 심사('23.4.20, '23.6.27, '23.7.6, '23.8.27, '23.9.19.) - 상임위 가결·법사위 회부('23.12.19.) - 법사위 상정('24.1.31.) 이후 임기만료 폐기
제22대 국회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25. 4. 10.	- 상임위 상정('25.8.21.)

- 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포함되는 사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법 제정은 필요하나, AI 등 최근 기술환경 변화와 미디어 융복합 흐름을 고려하여 법의 규율 범위와 진흥 방안에 대한 입법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 분야 장르 간 구분없이 지원(전속작가제 등 약 100억원 수준) 중이며, AI 등 기술발달로 장르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점과 해외에서 별도의 사진진흥법 제정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본칙 15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본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사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사진 창작등의 지원)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기술개발 및 디지털사진 신뢰체계 구축 지원)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1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12조(사진자료의 보존)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의무) 제1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15조(벌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7,000만원(연평균 3,400만원)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음.

[제 정 안 에 따 른 추 가 재 정 소 요 추 계 : 2026 ~ 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 평 균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60					60	12
실태조사 (안 제6조)	110	-	-	-	-	110	22
합 계	170					170	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적 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 법의 제명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로 함.
- 이 법은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사진, 사진작품, 사진문화, 사진산업 등 주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안 제2조).
 - (사진)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것으로, 예술적·문화적·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것
 - (사진작품) 사진 활동을 통해 산출된 유형·무형의 창작물(종이 등 유형물뿐 아니라 디지털 파일 형태를 포함)
 - (사진문화) 사진을 매개로 형성되는 예술적 표현, 사회적 소통, 기록과 보존 등의 활동 전반
 - (사진산업) 사진의 창작, 제작, 유통, 전시, 교육,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산업
 - (사진진흥) 사진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사진산업의 발전과 사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전반

- (사진서비스업) 사진의 촬영, 편집, 인화, 보정, 출력 또는 이와 관련된 디지털 사진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인 촬영 장비 등을 운영하는 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사진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함(안 제4조).

2)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진의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고,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진”이란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것으로서, 예술적·문화적 또는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사진작품”이란 작가가 사진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형·무형의 창작물(종이 등 유형물에 나타내거나 디지털파일 형태로

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에 담긴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진문화”란 사진을 매개로 형성되는 예술적 표현, 사회적 소통, 기록과 보존 등의 활동 전반을 말한다.
4. “사진산업”이란 사진의 창작, 제작, 유통, 전시, 교육,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사진진흥”이란 사진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사진산업의 발전과 사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전반을 말한다.
6. “사진서비스업”이란 사진의 촬영, 편집, 인화, 보정, 출력 또는 이와 관련된 디지털 사진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인 촬영 장비 등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의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고, 사진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진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검토사항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총칙적 조항으로서, 앞서 개별법으로 제정된 「미술진흥법」, 「국악진흥법」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안 제4조는 제정법안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률은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는 사진이 ‘미술’의 한 분야로서 현행 「미술진흥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미술진흥법」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에도 필요한 조항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항
미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 14. (생 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등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 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演戲)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진작품’의 정의 규정에서 종이·디스크 등 특정 매체를 열거할 경우 창작물의 다양한 기록 및 저장 형태를 포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정의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고, ‘사진문화’ 및 ‘사진진흥’에 관한 정의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⁹⁾.

- 제정안 조문 중 제12조(사진자료의 보존) 외에는 사진문화에 대한 내용이 없음.

- 「문학진흥법」, 「국악진흥법」, 「미술진흥법」 등 유사 법률에 ‘진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사례 없음.

9) 문체부 수정의견

제정안	문체부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진”이란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것으로서, 예술적·문화적 또는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사진작품”이란 <u>작가가 사진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형·무형의 창작물(종이 등 유형물에 나타내거나 디지털파일 형태로 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에 담긴 것을 포함한다)</u>을 말한다. 3. “사진문화”란 사진을 매개로 형성되는 예술적 표현, 사회적 소통, 기록과 보존 등의 활동 전반을 말한다. 4. “사진산업”이란 사진의 창작, 제작, 유통, 전시, 교육,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사진진흥”이란 사진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사진산업의 발전과 사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전반을 말한다. 6. “사진서비스업”이란 사진의 촬영, 편집, 인화, 보정, 출력 또는 이와 관련된 디지털 사진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인 촬영장비 등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2. “사진작품”이란 사진을 작가가 사진을 통해 사상 또는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u><삭 제></u> <u><삭 제></u>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제정안의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사진 진흥 및 사진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사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창작·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6조).

2)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제5조(사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 및 사진서비스업의 건전한 육성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진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진 및 사진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2. 사진 및 사진서비스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진 창작 활성화 및 사진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AI) 기반 사진 위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대응 전략
5. 사진 제작자의 식별체계 구축, 메타데이터(촬영정보, 위치정보 등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활용을 위하여 데이

터의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표준화 등 디지털 보안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사진 제출·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전송·인증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7.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8. 사진의 국제교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인증 연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진 및 사진서비스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진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미술진흥법」 제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미술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미술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¹⁰⁾.

-
- 10) 「미술진흥법」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미술진흥 중·장기 기본방향
 - 2. 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3. 미술 창작·기획·전시 활동의 지원
 - 4.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 6. 미술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 7.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
 - 8. 공공미술품의 관리
 - 9. 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

- 사진은 「미술진흥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미술의 세부 장르로 포함되어 계획 수립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사진분야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별도의 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안 제5조 및 제6조는 사진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진 진흥 정책의 기본체계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내용은 사진 및 사진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검토될 수 있는 세부 과제에 해당하므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법률상 규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술진흥법」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항
미술진흥법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 중·장기 기본방향 2. 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미술 창작·기획·전시 활동의 지원 4.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6. 미술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7.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 8. 공공미술품의 관리 9. 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0.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악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문학진흥법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2. 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9. 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다. 사진 창작 및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안 제7조 및 제11조)

1) 제정안의 요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진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진창작자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박람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지원, 국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국가 간 사진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2)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제7조(사진 창작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이하 “사진창작등”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진창작자 및 사진창작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박람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지원
2. 국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3. 국가 간 사진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4.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검토사항

○ 사진은 미술의 한 분야로서 「미술진흥법」에 따라 창작, 전시, 국제교류·해외진출, 연구·조사 및 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술진흥법」은 미술 창작 지원, 미술 전시 지원, 미술 창작 공간등의 확충, 지역미술 활성화, 국제교류·해외진출 지원, 관련 단체·법인 지원 등 미술의 창작·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¹¹⁾.

11) 「미술진흥법」 제7조(창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미술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자, 미술 전시업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창작공간등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및 미술품등의 전시·보존·

[미술진흥 사업 내 사진 관련 지원사업 현황]

사 업 명	'25년 예산(백만원)	사진 지원 현황
전속작가제 지원	4,150	• '19~'25년 참여작가 504명 중 사진작가 41명 지원 (25년 사진작가 총 34명 지원(7명 신규 선정))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1,073	• '24년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연구 지원 3건 중 사진작가(구본창) 연구지원 1건 선정
작가 온라인 플랫폼 지원	300	• '24년 참여 작가 309명 중 사진작가 9인의 온라인 플랫폼 홍보 지원
한국미술해외 출판지원	929	• ('24년) 도서 'Shine Brightly: Korean Photography Since 1957(찬란하게 빛나는: 1957년 이후 한국사진)' 출판지원
국내유통업	2,755	• ('24년) 국내 화랑 해외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1명 작가 (8점) 지원 • ('24년) 국내 아트페어 해외개최 지원사업 2명 작가 지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이하 “창작공간등”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제3항에 따라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미술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역 간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 및 배급
2.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7조 및 제11조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과 국제교류·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진을 미술과 구분되는 독립적 예술분야로서 인정하여 창작과 유통 등을 장려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7조 및 제11조의 내용은 ‘사진’보다는 ‘사진작품’ 지원에 적합하고, ‘사진작품’ 지원은 「미술진흥법」과 중복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안 제8조 및 제9조)

1) 제정안의 요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사진작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디지털사진 신뢰체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2)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진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지원된 비용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개발 및 디지털사진 신뢰체계 구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사진작품, 사진산업 및 사진서비스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촉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위변조[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탐지 및 대응 기술
2. 사진 제작자 및 촬영 장비 식별 시스템 개발
3. 사진 메타데이터의 구조화 및 표준화 기술 개발
4. 정부기관 제출용 사진의 디지털 전송 및 인증 시스템 개발
5.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 및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
6. 그 밖에 사진산업과 공공사진 관리에 필요한 보안·신뢰 기반

기술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협력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미술진흥법」 제1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는 미술과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구체적인 체계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¹²⁾.
- 또한, 「미술진흥법」 제22조는 미술 창작·기획·전시 및 미술품 유통·감정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³⁾.

12) 「미술진흥법」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 산·학·관의 협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교류·재교육 기회 확대
4. 연구기반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3) 「미술진흥법」 제22조(연구·조사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기획·전시와 미술품 유통·감정, 미술품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사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양성기관 지정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사진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사진의 창·제작 및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사진 분야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의 지원·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악진흥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음.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항
국악진흥법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⑤ 그 밖에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9조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¹⁴⁾와 최근의 기술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제정안과 같이 구체적인 기술개발 지원의 항목을 법률에서 열거하는 것은 오히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유연하고 적절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의 조문명을 제9조(기술개발 지원)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기술개발 지원 항목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공예소재·재료 및 처리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창작에 필요한 공예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 및 지정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술개발사업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마.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안 제11조)

1) 제정안의 요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2)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제11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발굴하여 포상·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¹⁵⁾.

15)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안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진 창작자와 관련 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사진 분야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진흥 효과를 높이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항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바. 사진자료의 보존(안 제12조)

1) 제정안의 요지

- 국가는 사진문화의 보존과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진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2조).

2)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제12조(사진자료의 보존) 국가는 사진문화의 보존과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진자료가 수집·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2조는 국가가 사진문화의 보존과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진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진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며, 나아가 사진산업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사진자료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보존과 진흥 효과를 높이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사. 개인정보 보호 의무(안 제13조)

1) 제정안의 요지

- 사진산업 또는 사진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사진 이미지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2)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의무) 사진산업 또는 사진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진 이미지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진서비스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토사항

- 안 제13조는 사진산업 또는 사진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사진 이미지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사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개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디지털 사진 활용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아. 벌칙(안 제15조)

1) 제정안의 요지

- 사진산업 종사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안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2)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제15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진서비스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5조는 안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진 이미지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 하거나 사진서비스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진산업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실효성 있게 담보하고, 사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과 제재 수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로16), 제정안을 현행대로 둘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임에도 제재

16)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수준이 낮아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4

-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참고 1

사진 관련 미술 분야 사업 등 추진 현황

□ 미술진흥 사업 내 사진 지원 현황(예정)

사 업 명	'25년 예산(백만원)	사진 지원 현황
전속작가제 지원	4,150	• '19~'25년 참여작가 504명 중 사진작가 41명 지원 ('25년 사진작가 총 34명 지원(7명 신규 선정))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1,073	• '24년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3건 중 사진작가(구본창) 연구지원 1건 선정
작가 온라인 플랫폼 지원	300	• '24년 참여 작가 309명 중 사진작가 9인의 온라인 플랫폼 홍보 지원
한국미술해외 출판지원	929	• ('24년) 도서 'Shine Brightly: Korean Photography Since 1957(찬란하게 빛나는:1957년 이후 한국사진)' 출판지원
국내유통업	2,755	• ('24년) 국내 화랑 해외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1명 작가 (8 점) 지원 • ('24년) 국내 아트페어 해외개최 지원사업 2명 작가 지원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내역(사진 1,327점, 전체 11.2% 수준)

('24.12.31. 현재, 단위: 점)

구분	회화Ⅰ	회화Ⅱ	드로잉	판화	조각설치	사진	뉴미디어	공예	디자인	건축	서예	합계
수 량	1,594	3,789	939	1,744	1,004	1,327	359	634	35	20	374	11,819

□ 사진 분야 예술인 통계

구분 (기준 연도)	예술활동증명 ('25.4월)	창작준비금(일반) 수령 ('24년)	창작준비금(신진) 수령 ('24년)
인원 (전체 대비 비율)	3,376명 (2%)	266명 (1.3%)	26명 ¹⁾ (0.8%)

참고 2

사진 관련 업종 현황

□ 전국 사진 관련 산업 현황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23.12.31. 기준)

분류 (코드)	산업분류명	주요내용	예시	총 사업체	총 종사자수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17,558	26,28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사진관 또는 고객의 사무실 및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인 물을 촬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영화용 이외의 행사 사진 및 비디오 영상 촬영활 동도 포함	증명사진, 졸업앨범, 개인사진 스튜디오, 결혼비디오 촬영 등	14,248	20,877
	상업용 사진촬영업	광고회사, 출판업자 및 기타 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서비스를 제공하 는 산업활동	의류사진, 광고사진, 카탈로그사진 촬영 등	1,929	3,120
	사진처리업	사진 및 비디오의 현상처리, 인화 및 확대 처리 등을 수 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슬 라이드 제작, 오래된 사진 복 원 및 투영도 수정 등을 수 행하는 경우도 포함(텔레비전 및 영화산업에 관련된 영화 필름 현상 제외)	사진 현상 서비스, 사진 수정 서비스 등	1,381	2,284
■ 사진관련 소매업				328	555
소매업 (47)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 하는 산업활동	-	328	555
■ 사진관련 제조업				266	1,250
의료, 정밀 과학기 및 시계 제조업 (273)	사진기 영 사기 및 관 련 장비 제 조업	사진기 영사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266	1,250

참고 3

관련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등

세미나명	주최(개최일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 박수현·김윤덕·김주영· 오세희 의원실 (2025.5.1.)

참고 4

사진 관련 협회 현황

연번	법인체명	하7일	소재지	대표자	구성원 (회원수)	설립목적	소관
1	한국프로 사진협회	1958 0322	서울 광진구	권용옥	1,139명	사진문화 발전을 위한 사진기술 질적 향상 기대, 사진가의 지 위향상 등	시각예술 디자인과
2	한국사진 작가협회	1963 0130	서울 양천구	유수찬	9,483명	사진문화 발전향상 및 사진 작가 권익 옹호	시각예술 디자인과
3	한국광고 사진가협회	1988 0303	서울 송파구	심현준	80명	한국광고사진문화의 발전과 국제 간 문화교류에 공헌, 국내 광고 사진가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도모	방송영상 광고과
4	한국판화 사진 진흥협회	1995 1205	서울 종로구	정승우	확인 불가	판화사진의 대중보급 및 이해증 진과 국제교류 증진에 이바지하 며 서울판화미술제 개최, 판화시 장 유통 질서 확립	시각예술 디자인과
5	한국디지털 사진작가협회	2011 0323	서울 영등포 구	김홍석	950명	디지털이미지를 활용한 문화 콘 텐츠 아카이브 생성, 축적, 관리를 통해 국가문화유산 기록 및 사진, 영상 및 융합예술 영역의 창작 및 연구활동 지원	시각예술 디자인과
6	한국사진 교육학회	2017 0308	경기도 고양시	유기상	75명	사진예술 교육, 학술, 창작활동을 통 하여 사진교육학과 문화예술교육 의 발전을 도모하며 사진교육의 진흥과 질적 개선	문화예술 교육과
7	한국사진 갤러리협회	2022 0913	서울 강남구	이순심	46개 화랑	사진미술의 대중보급 및 이해 증 진과 국제교류에 이바지, 건전한 사진예술 작품 시장 육성과 유통 질서 확립	시각예술 디자인과
8	박건희 문화재단	2001 0503	경기도 성남시	박성호	3명	박건희 기념사업과 사진 및 미디 어아트 관련 문화예술의 창작 지 원, 학술연구활동 지원하고 문화 교육에 기여	시각예술 디자인과
9	한국사진앨범 인쇄협동 조합연합회	1987 1110	서울 영등포 구	성철현	11개 조합 843개 업체	초중고 졸업사진앨범 제작 및 유 통 관련 정보 제공 및 품질 제고	중소벤처 기업부

연 번	법인체명	하 기 일	소재지	대표자	구성원 (회원수)	설립목적	소관
10	한국사진영상 산업협회	2012 0406	서울 중구	이봉훈	확인 불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 강화, 각종 정보의 수집·홍보 등을 통해 사진·영상기자재업계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산업통상 자원부
11	한국사진학회	1992 02	서울 서대문구	박주석	32명	사진관련분야의 학술과 교육의 발 전을 도모하고 회원간의 정보교 환을 통해 사진문화 향상에 기여	학술단체
12	한국사진 기자협회	1964 0424	서울 중구	이호재	70여 언론사, 500여 명 사진기자	사진기자 권익 옹호, 취재환경 개 선을 통한 언론 문화의 발전과 보도사진의 지속 연구	서울특별 시

□ 전국 사진관 현황 (총 12,572개)

(‘20년 기준 한국프로사진협회 자료, 단위: 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3,200	856	501	636	408	410	221	36	2,54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401	389	475	485	410	625	726	250	12,572